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지난 호에 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2009. 4. 6.]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제품 · 재료 · 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1. 유리병 ·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 · 유리병 ·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재료 · 용기는 제1항에 따른 제품 · 재료 · 용기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 재료 · 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 재료 · 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 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 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 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 · 주사침 · 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 · 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전문개정 2009. 4. 6.]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 · 부과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 · 재료 · 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 재료 · 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개정 2012. 10. 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 · 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 재료 · 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 ·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 재료 · 용기 : 해당 제품 · 재료 · 용기의 연간 출고 · 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2. 그밖의 플라스틱 제품 · 재료 · 용기 : 해당 제품 · 재료 · 용기의 연간 출고 · 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 · 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 ·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 · 수입실적 및 회수 · 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 · 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 · 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13. 1. 22.]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재료 · 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 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개정 2009. 12. 24., 2013. 1. 2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 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제 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종전 제14조의 3은 제14조의 6으로 이동 <2014. 2. 11.>]

제14조의 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 2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14조의 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 2제 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14조의 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3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2. 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 3에서 이동 <2014. 2. 11.>]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 · 재료 · 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실적 등을 조사 ·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제품 · 재료 · 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 10. 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 ·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 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15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 2제 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7. 21., 2017. 12. 26.>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 · 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 · 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 · 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 · 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

[전문개정 2009. 4. 6.]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 · 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 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 · 포장재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2016. 12. 30.>

1.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 · 포장재 PW

〈다음 호에 계속〉